

의안번호	제 2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334 회)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9월 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2
----------	----

제출연월일 : 2014년 9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주요기능(안 제2조)
  -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조정
  -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등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안 제3조)
  - 공동위원장(행정부지사, 민간위원) 2명 포함 위원 20명 이내
  - 당연직위원(5명) : 안전행정국장, 균형건설국장, 소방본부장,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충청북도 부교육감
  - 위촉직위원 : 재난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재난대응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단체·협회에 소속된 사람 등

○ 위촉위원 임기(안 제4조)

- 2년, 2회 연임가능

○ 회의운영(안 제7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요약 발취)**

**6. 비용추계서 : 불 임**

##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균형건설국장, 소방본부장,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충청북도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안전 대응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충청북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충청북도 및 협력위원회 참여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 평 시 :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재난발생시 :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등

## 2. 비용 발생요인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실비 지급수요 발생

## 3. 관련조문 : 안 제8조(수당 등)

## 4. 연도별 비용추계

- 추계의 조건 : 위촉직 위원은 14명 기준으로 정기개최(상·하반기 각 1회, 2시간) 할 경우(수시회의 제외)

※ 위원 : 20명 (당연직 6명, 위촉직 14명)

- 연 2,800천원(14명 × 100천원 × 2회)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4년)	2차년도 (‘15년)	3차년도 (‘16년)	4차년도 (‘17년)	5차년도 (‘18년)	계
참석수당	1,400	2,800	2,800	2,800	2,800	12,600

## 5.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